#### 「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」

#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(추경) 공고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「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」을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7월 4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### 1. 사업개요

- 폭염작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의 일
   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
- 공모 개요 (신청기간 '25. 7. 4.(금) 12:00 ~ 7. 18.(금) 18:00)
  - ※ 폭염 고위험 업종 등의 신청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시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신속 보급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조기 마감 할 수 있음

구분	온열질환 예방장비					
	□ 폭염 고위험 업종 중심으로 지원					
	○ 폭염 고위험 업종 : 제조업*, 건설업(본사), 시설관리및서비스업, 도소매업, 농림업, 운수창고업					
지원대상	* (산재보험 업종분류-중업종) ①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, ② 화학및 고무제품제조업, ③ 선박건조및수리업, ④ 금속제련업					
	□ 기업규모					
	○ <b>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</b> .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기준 이하 사업장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					
지원품목	이동식에어컨, 제빙기, 산업용선풍기, 그늘막 등					
지원한도	동일사업주 당 2,000만원					
지원비율	공단 판단 금액의 70%까지					

\* 상반기 신청사업장도 지원한도 및 지원기준에 내에서 재신청 가능

#### 2. 지원자격

○ **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**로서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< 지원 자격>

-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(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)
-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  - ※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또는 중소벤처24(smes.go.kr)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- ③ **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**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'중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  - ※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또는 중소벤처24(smes.go.kr)에서 중소기업 확인서(중기업)를 발급받아 제출하고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

### 3. 참여제한
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, 지급대상자 결정
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

-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
- ③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
-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⑤ '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등),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, 안전 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
#### 4. 지원내용

○ (지원한도 및 비율)

품목구분	지원한도	기업 규모	지원비율
온열질환	동일 사업주당	<ul> <li>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</li> <li>소기업* 규모 기준 사업장</li> <li>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</li></ul>	공단 판단
예방장비	2천만원	중기업 규모 협력업체	금액의 70%

- \* 소기업 규모 기준 :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또는 중소벤처24(smes.go.kr) 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[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]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- (지원품목 및 지원기준)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
- (지원방식)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
   우선지원 결정
  - \* 폭염 고위험 사업장의 신청 금액이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업종은 미선정 될 수 있으며, 제출서류 미비시 반려처리 될 수 있음.
  - 일선기관별 배정예산을 초과 신청시 **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**(붙임 2)에 따라 **대상자 선정** 
    - \* 다만,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미달시 추가 선정 가능하며 추가 선정 이후에도 예산 미소진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·선정
  - (폭염 고위험 업종) 제조업\*, 건설업(90515), 시설관리및서비스업(901\*\*), 도소매업(91001), 농림업(6\*\*\*\*,8\*\*\*\*), 운수창고업(500\*\*,501\*\*) 등
    - \* (산재보험 업종분류-중업종) ①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18\*\*), ②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(209\*\*), ③ 선박건조및수리업(226\*\*), ④ 금속제련업(219\*\*)
- (제품선정) 성능·사양\*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제작·판매업체 선정
  - \* 냉방능력, 소비전력, 배수방법(배수펌프 내장여부, 응축수 물통(용량) 등), 열풍 배기방법 등

## 5. 세부 사업절차

- ① 사업신청(사업장)
- (신청기간) <u>'25. 7. 4.(금) 12:00 ~ 7. 18.(금) 18:00</u>
  - ※ 폭염 고위험 업종 등의 신청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시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신속 보급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조기 마감 할 수 있음
- (신청방법) <u>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에 회원</u> 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
  - ※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(공고문 확인) → 참여사업장 → 공동 인증서 로그인→ 신규사업신청 → 건강일터조성지원

#### 〈유의사항〉

- ▶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▶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제작·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
- (제출서류)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

사업신청 시 제출서류	비고
<b>1</b>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공통
② 견적서	공통
<ul><li>❸ 상품설명서(카탈로그) 등 - 제품명, 외관사진, 사양*, 규격</li><li>★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</li></ul>	공통
◆ 가격결정 근거자료 (〈붙임1〉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 및 기준 참조)	
5 지원대수, 설치현장 등 대상 결정을 위한 자료 - 온열질환 예방장비: [건설업 본사] 도급계약서 사본(전년도 또는 당해연도) [그 외 업종] 〈서식1〉 증빙자료	
<b>③</b> 중소기업 확인서[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	해당 시

#### <제출자료 세부설명>

- ●은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〉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  -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  -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완납 확인증 제출
- **③**은 신청 모델명과 상세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
- ④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이 정해진 품목 외 제품만 제출
-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: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+거래명세서 5건 등
- **6**은 〈붙임2〉의 우선선정 점수 부여 가능한 증빙(해당시 제출)
- ※ 상기제시된 서류 외에도 서류 검토 단계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② (신청·선정)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
  - \* 폭염 고위험 사업장의 신청 금액이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업종은 미선정 될수 있으며, 제출서류 미비시 반려처리 될 수 있음.
  - ※ 상반기 미선정 폭염 고위험 업종은 우선결정 예정
  - 일선기관별 배정예산을 초과 신청시 **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**(붙임 2)에 따라 **대상자 선정** 
    - \* 총 예산 범위에서 선정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·선정, 우선지원 선정기준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자료만 인정
- 선정시 제출서류(증빙자료)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하고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공문 안내
- ③ (보조금 결정) 보조금 결정 대상자 및 금액 결정(공단)
- <u>폭염 고위험 업종은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지</u> 원비율에 따른 금액을 신청·선정 후 즉시 보조금 결정
  - 그 외 업종은 공고 완료 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(공모 종료 후 부터 7일 이내 결정예정)
- 보조금 지급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 sha.or.kr)를 통해 확인 가능
  - ※ 로그인 > 사업신청 내역 >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"결정통보"

- ④ (장비 구매·설치) 재정지원 신청 계획에 따라 사업장 구매·설치(사업주)
-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\* 사업장 설치
  - \* 긴급 추경사업으로 사업장 및 공급사에서는 가급적 7월말까지 설치·가동할 수 있도록 권장
- **선금급 신청**(사업장 요청 시)
-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 지원을 위해 선금급 제도 시행

선금급 신청 시 제출서류	비고
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	〈서식2〉
※ 사업 신청 시 선금급 내용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	\^\\ ¬∠/
② 입금신청 통장 사본(사업주)	
❸ 지급보증보험증권	
※ 보험 계약기간은 약정일(선지급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4년(사	
후관리기간(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)으로 적용, 가입금액은 보조 결정금액 전체	

- \* 선금급 신청양식<서식2>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, 보조결정 금액의 70% 이내에서 선금급 가능,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, 공급업체에 위임지급하지 않음
- ⑤ (보조금 신청) 보조금 지급 요청시 아래 서류를 공단에 제출(사업주)
  - \* 당해연도 배정예산 소진시 보조금 지급이 다음연도로 이월 될 수 있음

7	비고	
❶ 입금신청 통장 사본 각 1부		
<b>❷</b> -1 실거래 입증서류: 거래내역 오프라인 구매 시	증빙 <b>온라인 구매 시</b>	
(제품 구매) 계약서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등	구매내역(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) * 포함내용: 모델명,수량,금액,결제방법	
<b>2</b> -2 실거래 입증서류: 입금증빙		
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		
4 지급보증보험증권	〈붙임4〉	
⑤ 하자보증보험증권(구매(제작·판매)	〈붙임5〉	
<b>③</b>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	〈서식3〉	
☞ 품목별「지원품목 개선완료 증		
❸ 보조금 지급 위임장(사업장 요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〈서식4〉

○ **보조금 결정 전 계약** 또는 장비 구매·설치 **불가(**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)

〈보조금 지급에 따른 서류 설명〉

<b>2</b> -2 2	❷-2 입금증빙서류								
오프라 인 구 매시	① (무통장입금) 이체확인증*+ 전자세금계산서 +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(원본대조필) 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 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								
온라인 구매시	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(무통장입금) 이체확인증* +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(국세청 홈택스)) 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 계좌번호+은행명 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 ② (카드결제) 신용카드매출전표* + 신용카드복사본** * (신용카드매출전표)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** (신용카드복사본)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※ (사용가능카드) 법인카드(법인)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(개인사업자)								

- ◆는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〉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-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-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완납 확인증 제출
- **⑤**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\* 및 가입(보조결정)금액 제출
  - \* 보험 계약기간은 "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4년(사후관리기간(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)"으로 적용
- **③**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\* 및 가입금액(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%이상) 제출
  - \* 보험 계약기간은 "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~ 3년 2개월"으로 적용
- ※ [중요]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신속한 개선과 보조금 신청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사례 방지를 위하여,

금년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내에 보조금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\* 여부를 확인
  - \* 기제출한 신청서의 지원품목 사양, 납품 제작·판매업체 일치 여부 등
- **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**(사업장 요청시)
  - 보조금 신청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<서식4>
  -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입금(부가세 포함)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\*을 제출
    - \*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
- ⑥ (보조금 지급) 투자완료확인 이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(공단)
- ⑦ (사후관리) 사후관리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
- 아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절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
- 6.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취소 및 제재
-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 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 견될 경우, 보조금 신청 기업은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 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 가금(최대 5배)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  - ※ ▲ (거짓·부정)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, 5년 제한, ▲ (임의매각·훼손·분실) 보조금 및
    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, ▲ (목적외사용·국외이전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

#### 〈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〉
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- ②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
- ③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- ④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
- ⑤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
- ⑥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#### 7. 기타사항

- (사업문의)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
  - ※ 지역별 문의처 <붙임3> 참조
- **사후관리기간** 동안 **지원품목**(100만원이상)의 **A,** 중 품질보증을 위하여, 제작·판매업체의 **하자보증보험증권**(3년2개월) 제출[붙임5 참조]

#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

## □ 지원품목 및 기준

프무대	지원	ul ¬	
품목명	건설업 본사*	그 외 업종	비고
	■폭염 고위험 사업장 우선으로 시 그 외 업종 접수 시 우선	• 전/후 온도측정 불필요	
	■지원대수		• 사후기술지도 1~3년
이동식 에어컨	- 옥외작업 및 고온작업 등 현 당 이동식에어컨 및 산업용·	황을 확인하여 사업장(건설현장) 선풍기 각 최대 5대 지원	• 근로자 작업장소 냉방 용도에 한정하며 고객
	- 이동식 에어컨은 '20~'25 지원(개별 사업장 기준)	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	대기실, 사무실 냉방 용도 설치 등 지원 불가
	■산업용 선풍기 단독 신청 불기	<b> </b>	
산업용 선풍기	- 이동식 에어컨 신청시어 ※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(손망실・ ■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- 예시) 산재보험 가입자	• 전/후 온도측정 불필요 • 사후기술지도 제외 (소모품)	
	사업장은 1대까지 지원		
	■ 폭염취약업종에 한하여 지원	· -	
	■ 현장 규모, 근로자 수 등을 고	• 사후기술지도 1~3년	
제빙기	- 건설업 본사 최대 3대(단, 3 물통형에 한함)	• 근로자 작업장소 또는 휴게시설 설치 조건에	
	- 그 외 업종 ① 30인 미만 1 ② 30인 이상 최대 2대(단, 2	한정하며, 고객지원용 설치 등 지원 불가	
	현장과 작업거리, 근로자수	지원 불가	
그늘막	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ㆍ지원	※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	• 사후기술지도 제외
	※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·도난 방지)	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	(소모품)

- \* 건설업 본사는 이동식에어컨 등 설치는 건설현장으로 직접 설치한 후 공사가 종료된 경우 타현장에서 사용하거나 현장이 없는 경우 본사 소재지에서 사후기술지도 실시
- \*\*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(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)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

- □ (가격기준) 에어컨은 냉방능력, 그늘막은 면적별로 공단판단 표 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(표준가격×70%)를 정하여 지원
  - (이동식 에어컨)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

규격	이상	미만	공단판단 표준가격*	<b>최대지원한도</b> (표준가격×0.7)
		~3,000kcal/h (3,489W)	가격결정 - (원	그거자료 제출 필요 가계산서 등)
	3,000kcal/h (3,489W)	4,000kcal/h (4,652W)	1,138천원	796천원
	4,000kcal/h 5,000kcal/h (4,652W) (5,815W)		1,228천원	859천원
냉방능력	5,000kcal/h (5,815W)	6,000kcal/h (6,978W)	1,488천원	1,041천원
0007	6,000kcal/h (6,978W)	7,000kcal/h (8,140W)	1,713천원	1,199천원
	7,000kcal/h (8,140W)	8,000kcal/h (9,304W)	2,012천원	1,408천원
	8,000kcal/h (9,304W)	9,000kcal/h (10,465W)	2,052천원	1,436천원
	9,000kcal/h~ (10,465W)		2,559천원	1,791천원

- ※ 냉방능력 3,000kcal/h(3,489W)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 징구 필요
- ※ **공단 표준가격**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 하였으며, 제품의 소재, 성능, 옵션 등에 따라 **사업장**에서 **선정한 제품**과 **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**
- ※ 지원가격 판단을 위해 신청 모델명과 상세 제원(냉방능력 등)이 포함된 카탈로그를 제출하고,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(공인 기관\*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) 등을 함께 제출
  - \*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, 넴코코리아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㈜에너지인증연구소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
- (산업용선풍기)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"나라장터 종합쇼핑몰 (https://www.g2b.go.kr)"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공단 판단 표준가격(가격결정 근거자료)으로 함
- (그늘막)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

규격	이상	미만	공단판단 표준가격 <sup>*</sup>	<b>최대지원한도</b> (표준가격×0.7)
면적 (=그늘막 가로×세로)		~5m²	234천원	163천원
	5m²	10m²	256천원	179천원
	10m²	15m²	300천원	210천원
	15m²	20m²	320천원	224천원

- \* 측면 그늘막, 벨크로테입, 염색 여부, 지지봉 종류에 따른 추가금액 등은 선택시항으로 지원 불가
- (제빙기)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\*에 따라 가격 결정
  - \* 공급업체와 거래가 아닌, 실제 사용자와 거래한 전자세금계산서 5건 제출 (모델명 확인 가능한 것으로 거래명세표 포함)
    - →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출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포함(확정신고 된 것)

## 폭염 고위험 업종 등 시업장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항목								점수			
■ 기본 항목								100점			
①~④ 배점 부여가 가능한 항목을 모두 합산 (최대 80점)											
항목					용			배점	Н	고	
① 고위험 <sup>2</sup> 보유 사업	※ 작업	폭염 고위험 업종 또는 고열작업 <sup>1)</sup> 보유 사업장  ※ 고위험 업종(산재보험 가입기준): 제조업 <sup>*</sup> , 건설업본사 (90515), 시설관리및서비스업(901**), 도소매업(91001), 1) 공단 전산 활용							<b>*</b> IFII		
② 직업성 경 위험 사업 <sup>3</sup>	질병	'21년 이후 오역질화 산재 승인 사업장						최대 80점			
③ 폭염 <sup>4</sup> 고위험 사 <sup>4</sup> DB	취약 _ ·업장 <sup>_</sup>	고용노동부 무선 폭연 취약 고위현 사업상 DR 내 사업상     40   공단 서사활용 II									
4	٦	S단 기술지원	원을 통해 :	작업환경 7	ll선 지도빈	은 사업장(	'24~'25.6월	일말)			
작업환경/ 필요 사업		- <sup>®</sup> 폭염 예방 기술지원 <sup>®</sup> 산업보건 고위험 종합관리 <sup>®</sup> 국소배기장치 30 공단 전산 활용 성능평가 <sup>®</sup> 질식재해예방 현장지원 <sup>®</sup> 노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									
⑤ 사업장의 영세성 : 상시근로자에 따른 점수 부여 (공단 전산 활용)											
기준 5	인미만	5~10인 미만	10~15인 미만	15~20인 미만	20~25인 미만	25~30인 미만	30~35인 미만	35~40인 미만	40~45인 미만	45~50인 미만	20점
배점	20	18	16	14	10	8	6	4	2	0	

■ <b>가점항목</b> (증빙제출 불요) ※ 가점항목과 기본항목을 합산한 점수는 100점까지만 부여 가능	20점				
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('23~현재)	5점				
⑦ KOSHA-MS 인증,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(유효기간 내)					
⑧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('23~현재)	10점				

- ※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본항목 순번별 점수가 높은 사업장(①→②→③→④→⑤) 우선 선정.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 적은 순으로 선정
- ※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
- ※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**산업재해조사 및 통계**에서 사용하는 **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** (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)로 판단
  - 가.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 된 경우 :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
  - 나.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: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수

# 문의 및 접수처

# ○ **(문의)**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**1644-8845**

# ○ 접수처

연 번	일선기관	연락처	주소	관할지역
번	글인기건	면무시	<b>丁</b> 工	
1	서울광역 본부	02-6711-2834	(04512)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, 7층	서울특별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
2	서울동부 지사	02-2086-8025	(05836)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, 4층	서울특별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)
3	서울남부 지사	02-6924-8734	(07254)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, 8층	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
4	강원지역 본부	033-815-1043	(24436)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 회관 2층	경기도 가평군
5	강원동부 지사	033-820-2523	(25512)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, 정관빌딩 3층	강원특별자치도(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
6	부산광역 본부	051-520-0620	(46274)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, 4~7층	부산광역시
7	울산지역 본부	052-226-0548	(44713)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, 2층, 4층	울산광역시
8	경남지역 본부	055-269-0520	(51430)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	경상남도(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,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, 하동군, 남해군, 통영시, 고성군, 거제시)
9	경남동부 지사	055-371-7563	(50635)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, 양산노동합동 청사 4층	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
10	광주광역 본부	062-949-8757	(62364)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, 광주무역회관 빌딩 8,9,11층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시, 화순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장성군, 영광 군, 함평군)
11	전북지역 본부	063-240-8562	(55014)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	전북특별자치도(전주시, 정읍시, 남원 시, 완주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)
12	전북서부 지사	063-460-3642	(54150)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, 국립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3층	전북특별자치도(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)
13	전남지역 본부	061-288-8737	(58566)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, 전남개발공사 빌딩 7층	전라남도(목포시, 신안군, 영암군, 무안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진도군, 장흥군)
14	전남동부 지사	061-689-4932	(59640)전라남도 여수시 무선 중앙로 35	전라남도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)
15	제주지역 본부	064-797-7521	(63217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, 경제통상진흥원 4층	제주특별자치도

연 번	일선기관	연락처	주소	관할지역
16	인천광역 본부	032-510-0565	(21417)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	인천광역시
17	경기중부 지사	032-680-6545	(14542)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, 대신프라자 3층	경기도(부천시, 김포시)
18	경기북부 지사	031-828-1962	(11780)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,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	경기도(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), 강원도(철원군)
19	고양파주 지사	031-540-3823	(10390)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-59,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호	경기도(고양시, 파주시)
20	경기지역 본부	031-259-7158	(16229)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층, 14층	경기도(수원시, 화성시, 용인시)
21	경기서부 지사	031-481-7536	(15464)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, 천혜제일빌딩 2층	경기도(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)
22	경기동부 지사	031-785-3324	(13551)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, 소곡회관 2층	경기도(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)
23	경기남부 지사	031-690-1942	(17748)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87, 2~3층	경기도(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)
24	대구광역 본부	053-609-0545	(41936)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빌딩 20, 21층	대구광역시(북구, 중구, 동구, 수성구, 군위군),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)
25	대구서부 지사	053-650-6857	(42661)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, 성안빌딩 5층	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서구, 달성군), 경상북도(성주군, 고령군, 칠곡군 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)
26	경북지역 본부	054-478-8033	(39390)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	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, 영주시, 봉화군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의성군, 예천군, 영양군, 청송군)
27	경북동부 지사	054-271-2014	(37822)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	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)
28	대전세종 광역본부	042-620-5635	(34122)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(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보령시, 금산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)
29	충북지역 본부	043-230-7144	(28393)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, KT 3층	충청북도(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)
30	충북북부 지사	043-849-1031	(27478)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	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)
31	충남지역 본부	041-570-3423	(31169)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,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	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서산시, 예산군, 태안군)

#### 지급보증보험 예시(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)

#### <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>

▶ 계약기간: "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+ 4년으로 적용 ※ (예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: '25.9.30.(지급보증기간 산정: 4년)

보험기간: '25.9.30. ~ '29.9.29.

- ▶ 피보험자: 안전보건공단(사업자등록번호 122-82-04898), 보험계약자: 지급대상사업장
- ▶ 발급기관 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## < 작성 예시 >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(인터넷 발급용) 증권번호 제 기본사항 122-82-04898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안전보건공단 보험료 보험가인금액 ■ 일시납 □ 분납 2025년 9월 30일 ~ 2029년 9월 29일까지 总部心 보증하는 사항 보준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1.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.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약관 주시기 바랍니다. 목기사항 [주계약내용] 주계약명 클린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계약기간 2025년 9월 30일 ~ 2029년 9월 29일까지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주계약내용

## 하자보증보험 예시(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)

#### <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>

- ▶ 계약기간 : "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알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+ 3년 2개월으로 적용
- ※ 예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'25.6.30.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'25.6.15. 경우
  - ① '25. 6. 15. + 3년 2개월 => '25. 6. 15. ~ '28. 8. 14.
  -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계약기간 설정 가능
    - 하자보증보험 발행일이 '25. 6. 1.인 경우 계약기간
      - : '25. 6. 15.(계산서 발행일) + 3년 2개월 가산하여 => '25. 6. 1. ~ '28. 8. 14.
- ▶ 피보험자 : 지급대상사업장, 보험계약자 :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
- ※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: 계약금액(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)의 30% 이상
- ▶ 필요서류 :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(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가능)
- ▶ 발급기관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
  - ※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
  -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#### < 작성 예시 > 하자보증보험증권 (인터넷 발급용) 중권번호 제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対数線 일시남 □ 분남 2025년 6월 15일 ~ 2028년 8월 14일 보험기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1.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.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목기사항 [주계약내용] 요지한 산업안전보건성이 교육훈련 역량강화 시업 싫습 - 제형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제작 - 문송 - 현장 설치 주계약명 당보기간 2025년 6월 15일 ~ 2028년 8월 14일 계약세경일자 계약공약 보증공율 주계약내용 30%

#### - 16 -

# 서식1 지원대수,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

## ■ 사업장 정보

사업장명	사업장관리번호	
소재지	전화번호	

## ■ 옥외작업·온열환경 내용

■ 작업내용: 작업에 대한 개요를 기재					
사진 첨부	사진 첨부				
현장 전경	옥외작업 · 온열환경 사진				
사진 첨부	사진 첨부				
현장 전경	옥외작업·온열환경 사진				

2025. . .

사업주 확인 : (서명)

# 서식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

신업지	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시업 선금급 신청서 처리기간						
		(제17조2 관련		I H	<b>⊢ ⊢</b> ,	,	30일
신청인	성 명		생년월	일(성별)		(남,여	ने)
신청인 (사업주)	주 소	(전화번호 : )			)		
	사업장명			사업장관	리번호		
사업장 현 황	법인등록번호			사업개기	시번호		
	주 소		(전	화번호 :		)	
신청설비 설치소재지	신청설비 설치소재지						
참여		건강일터 조성지원					
참여 형태							
사업기간	착수일자	20 . ※ 공사착공 또는 구 기재	 · ·매계약약	일 완료역	일자 *	20 . 공사완료 ! 7	또는 대금결제일 기재
	참여구분 및 신			] 급 <sup>]</sup> 정액	선금 신청액		채권확보방법
□ 건강일	실터 조성 지원사	업( 등 00개 품목)	;	천원	천원		
<b>선금급을</b> 붙임 : 1	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7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수 수 료 없 음 성 금을 신청합니다. 불임: 1.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.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.						
	20						
	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한국	-산업안전	보건공단 〇	○광약	벽본부	(지역	본부·ス	사)장

## 서식3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

#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

- ▶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,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제작 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(또는 전부)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, 만약 **부정수급 행위**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□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(또는 전부)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,

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 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.

※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(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)는 투자금액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 함.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관 련 법 령

#### 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4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1.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

#### [혓법]

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000E	
2025	

사업주 성명 : (서명) 사업장명 :

## 서식4 보조금 지급 위임장

## 보조금 지급 위임장

(제17조제2항 관련)

■ 위임자	(단위: 천위
■ 11 <del>11</del> 7 1	(3) 71. 37 37

재정지원번호	사업장관리번호		
법인등록번호	사업개시번호		
사업장명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(	)
소 재 지 (전화번호)		<b>♂</b>	

■ 지급받는자(1)

(단위: 천원) 사업장 관리번호 공급설비명 사업장명 (수량)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(생년월일-성별) ( ) 소 재 지 7 (전화번호) 입금은행 은행) 처원 지급금액 예금주 계좌번호

본인이 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 업에 의한 보조금을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」제44조제1항 및「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」제17조제2 항에 따라 상기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

위임자

(인감 인)

- 붙임: 1. 위임자의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) 1부.
  - 2. 위임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.
  - 3. 위임받는 자의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.
  - ※ 위임받는 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 첨부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.지사)장 귀하

■ **지급받는자(2)** 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		
사업자 등록번호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(	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	
소 재 지 (전화번호)	H 지 번호)					-	
지급금액		입금은행 ( 계좌번호	은행)		예금	Ž	

■ 지급받는자(3)	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	
사업자 등록번호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(	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
소 재 지 (전화번호)					ති
지급금액	입금은행 ( 계좌번호	은행)		예금	7

# ■ **지급받는자(4)** 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사업장명		공급설비명 (수량)	
사업자 등록번호	대 표 자 (생년월일·성별)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
소 재 지 (전화번호)				☎
지급금액	입금은행 ( 계좌번호	은행)	예금	주

## ■ **지급받는자(5)** 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		
사업자 등록번호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(	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	
소 재 지 (전화번호)						73	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은행)		예금	주	